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 5. 1.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시행일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안 제2조, 제3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변경사유, 변경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법제화함.

나.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안 제4조)

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드론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드론산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 제6조,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드론산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드론 관련 주요정책 및 자금조달 방안 등 드론산업 관련 주요사항 및 부처 간 협업 필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함.

라.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지원 등(안 제8조)

국내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은 국가 직접 R&D를 수행하거나 민간 R&D에 관련 비용을 지원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마.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실생활과 밀접한 드론제품을 신속히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조성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바.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운영 등(안 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비행 가능여부, 안전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새롭게 개발된 드론이 원활하게 시험·실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함.

사. 창업 활성화 지원(안 제13조, 제14조)

정부가 창업자에게 융자, R&D성과 제공, 창업공간·장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드론산업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를 도모함.

아. 드론 첨단기술의 지정(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이 접목된 드론제품을 첨단기술제품으로 지정하여 상용화 이전단계의 규제를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기술제품이 신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자.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안 제18조,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침해시 대응 및 복구, 관련 교육 등을 전담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드론 관련 주요 신기술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함.

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안 제20조)

정부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지정하여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함.

카.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안 제21조)

정부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국내 드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드론산업의 시장 외연 확대를 도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말한다.

제4조(드론산업의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시장 전망 등 드론산업 전반의 현황
2. 드론 수요기관의 향후 구매 및 활용 계획
3.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드론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산업협의체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드론산업 주요 정책 및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 및 드론공역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4. 드론산업과 관련하여 드론 운영 상의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사항으로서 드론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드론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드론산업협의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국방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드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내외의 사람

④ 드론산업협의체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드론산업협약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드론산업협약체의 심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드론산업협약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드론산업협약체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지원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2. 우수사업자 지정으로 드론활용의 촉진이 필요한 사업
3.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 첨단기술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드론시스템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운영비용을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사업자에게 드론산업 경영·기술·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
2. 드론사업자에 대한 드론교육·훈련 관련 비용
3. 드론산업에 대한 정보화시설 설치·관리 비용
4. 드론산업 및 드론교통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보급 비용

5. 그 밖에 드론시스템 연구·개발 관련 사업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의 공동연구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최신 동향 정보 제공

2. 공동연구 시설 및 장소 제공

3. 그 밖에 드론시스템 연구·개발 관련 공동연구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신청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입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공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특화분야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유예·면제 또는 간소화가 필요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항공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있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 결정을 할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면적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특례 내용(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예·면제 또는 간소화 내용을 포함한다)

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신청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긴급하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재지정 및 해제) ①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제출한 조성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조성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이행 또는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유효기간 연장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제10조에 따른다.

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역상 드론 비행의 문제가 없을 것
2. 드론시스템의 실증·시험 등의 목적달성에 적합할 것
3. 드론 비행의 안전이 확보 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창업활성화 지원 등) ① 드론산업과 관련하여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적 지원 및 기술개발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창업 지원) 법 제1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금, 인력, 기술, 판로, 홍보, 입지 등에 관한 정보 및 상담 제공 또는 그 비용의 지원
2. 창업 공간의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2.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제16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드론첨단기술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첨단기술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이 영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드론첨단기술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5조에 따라 드론첨단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3조제4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드론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의 특허취소가 결정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드론첨단기술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취소에 앞서 드론첨단기술 지정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드론첨단기술 지정자가 제2항의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제2호의 지정취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식재산권 데이터의 보호
2.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강화

제19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단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로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등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드론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드론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드론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드론산업 관련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드론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 활용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온라인 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내용
5. 지정취소 일자(지정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 과학기술연구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드론산업 관련 공공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서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드론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시장 전망 등 드론 산업 전반의 현황
나.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드론 수요기관의 향후 구매 및 활용계획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협의체 운영

3. 법 제9조에 따른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 지원 업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업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업무
 6. 법 제12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12조제1호의 창업자금의 융자 지원 업무
 - 나. 법 제12조제2호의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 제공 업무
 - 다. 법 제12조제3호의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6. 법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기술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지정 지원 업무
 - 나.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우선 구매 지원 업무
 - 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지정취소 및 관리 지원 업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업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접수·확인·관리
 9. 법 제17조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업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정·지원·관리·취소
 11. 법 제19조에 따른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및 관리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협회

5.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술사회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위탁사항 발굴

2.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